

의안번호	2220003
의 퇴 인	강대식의원
회 답 일	2026.9.11.
추 계 번호	26C3630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병원선을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억 2,300만원 등 5년간 총 6억 2,300만원(연평균 1억 2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(안 제14조제1항)	623	-	-	-	-	623	12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제1항 (검진기관의 지정)	- 의료기관 및 보건소(보건의료원 및 <u>병원선</u>을 포함)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- (개정)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병원선을 추가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4조제1항 (검진기관의 지정)	○	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하는 (즉, 신청자격 부여) 내용이며, 병원선이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「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, [별표 4]의 지정기준을 만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
- 이에 본 추계에서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병원선*이 검진기관의 장비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장비 구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※ 인천 531호, 충남 501호, 전남 511호, 전남 512호, 경남 511호

- 병원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은 추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
 - 현행 인력 기준은 의사·간호사·임상병리사·방사선사를 일일 검진 인원에게 따라 배치하도록 하며, 시설 기준은 진찰실, 탈의실, 검진대기실, 임상검사실, 방사선촬영실을 확충하도록 정하고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병원선이 검진기관 신청자격을 가질 경우, 기존 병의원과 동일한 지정 기준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병원선의 한정된 규모 및 병원선 교체 계획 등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확충 여부를 현시점에 추계하기 어려우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¹⁾
 - 따라서 향후 시설 및 인력 확충 여력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²⁾
- 병원선 별로 필요한 보건의료장비를 추계 첫해인 2027년에 모두 확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보건의료장비 단가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실 구매 단가를 준용
 -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병원선별 보건의료장비 현황에 따라 일반 및 구강

1) 예시로, 충청남도 병원선(충남501호)의 경우 건강검진용 신규 시설을 설치할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. 또한 병원선은 선박 건조 단계에서 선내 시설의 구성과 배치가 정해지므로, 건조 이후 검진시설을 추가하려면 선박 구조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어, 운항 중인 병원선의 시설 확충 여부는 대체 건조 계획과 연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

2) 참고로, 경상남도는 2026년 12월에 신조 병원선이 건조될 예정으로 필요 보건의료장비가 달라질 수 있으나, 본 추계서는 2026년 9월 기준의 필요 보건의료장비 목록을 준용함

건강검진을 위한 필요 보건의료장비를 구비하며, 이후 유지 비용은 기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

- 「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과 [별표 4]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의 필요 장비 목록을 준용³⁾

□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을 준용하여 병원선의 보건의료장비 확충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가정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병원선 수리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건의료장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
 - 2026년 기준,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56억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, 이외의 병원선별 인건비, 유류비, 수리비의 1/3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운영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

□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개정안에 따라 병원선이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병원선별로 필요한 보건의료장비를 추계 첫해에 구비할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추계

- 추가재정소요는 필요 보건의료장비 개수에 설치 단가를 곱하여 추계
 - (필요 보건의료장비 개수)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병원선별 2026년 9월 기준 필요 보건의료장비 현황 준용
 - (설치 단가) 조달청 나라장터의 계약 체결 건 중 보건의료장비별 평균 단가⁴⁾ 준용

3) 일반건강검진기관은 신장 및 체중계, 혈압계, 시력검사표, 청력계기, 원심분리기, 혈액학검사기기, 혈액화학분석기, 방사선촬영장치, 구강검진기관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, 고압멸균소독기, 치경, 탐침 및 편셋,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를 구비해야 함

4) 2024~2026년 체결 건 한정

[표 2]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시 병원선(5척) 필요 보건의료장비 현황 및 단가

(단위: 개, 만원)

구분	의료장비명	설치 개수(A)	단가(B)	비용(C=A×B)
일반	신장 및 체중계	2	90	180
	혈압계(자동전자식)	1	99	99
	시력검사표	4	32	128
	청력계기(자동식)	5	1,584	7,920
	원심분리기	1	1,242	1,242
	방사선촬영기기	1	41,250	41,250
	혈액학검사기기	1	1,470	1,470
	혈액화학분석기	1	9,995	9,995
구강	교육용 치아모형세트	3	7.9	23.7
합계				62,308

주: 의료장비별 설치 개수는 2026년 9월 기준 인천 옹진호, 충남 병원선, 전남 511호, 전남 512호, 경남 511호의 필요 보건의료장비를 합산한 수치임

자료: 보건복지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

- 추계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억 2,300만원 등 5년간 총 6억 2,300만원(연평균 1억 2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	623	-	-	-	-	623	12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